

의안번호	2212989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E5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 규모 이하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 비과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비과세소득)	○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가 지급받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퇴직일시금(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퇴직연금(퇴직일시금이 아닌 추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됨
 - － 퇴직일시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등을 거쳐 산출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종합소득 구간별 6~45%)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
 - －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등)할 경우 적용하는 세율의 60~7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소득세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추계를 위해서는 비과세 적용대상 근로자 현황,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 수령액 규모와 이에 따른 소득세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비과세 적용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2023년 기준 퇴직급여 규모별 퇴직자 인원 및 신고대상세액 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퇴직급여 규모별 퇴직자 인원 및 신고대상세액 규모 현황: 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퇴직자 인원	퇴직급여	과세표준	신고 대상세액
퇴직급여규모별	3,322,503	58,073,263	20,947,092	1,756,605
1천만원 이하	2,279,424	9,547,807	5,629,039	54,835
2천만원 이하	522,833	7,323,558	3,710,949	72,598
4천만원 이하	265,698	7,355,476	2,920,891	93,652
6천만원 이하	91,673	4,454,155	1,353,193	64,832
8천만원 이하	41,682	2,879,330	850,899	53,246
1억 이하	23,858	2,131,472	647,985	49,635
2억 이하	53,974	7,648,697	1,895,496	196,746
3억 이하	22,541	5,482,705	1,114,550	163,052
5억 이하	12,415	4,653,046	1,072,465	253,225
5억 초과	8,405	6,597,017	1,751,625	754,78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 퇴직연금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96,891	13,170	899	130,492	17,526	1,194	174,159	20,919	1,355
	10년 초과	304	17	0.3	468	25	1	903	52	1
계		97,195	13,182	900	130,960	17,550	1,195	175,062	20,971	1,356

주: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현황 자료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